의안번호	2207706
의 뢰 인	김주영의원
회 답 일	2025.2.17.
추계번호	25B046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033억원, 2030년 4,934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조 9,800억원(연평균 3,960억원) 이상으로 추계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3,033	3,474	3,937	4,423	4,934	19,800	3,96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19조(지급수준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함.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전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수립,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및 사후관리를 의미하며[1],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받는 수급액과 취업지원서비스의 기간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담사 1인당 상시 관리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2	안 제19조(지급수준 결정)	—	• 미대상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고용노동부는 2024년 기준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18회(본회의 : 서면 5회 / 분과위 : 출석 9회, 서면 4회)의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으므로[2],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현재 고용노동부의 예산 및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 공식추계 –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1) 고용노동부, 「2024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p144.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 내역」, 2024.12.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임[3)]

○ 구직촉진수당은 2021년 1월 도입되었으며, 수급요건[4)]을 충족하는 자에게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표 2] 구직촉진수당 지급 현황: 2021~2023년

(단위: 원)

구분	2021	2022	2023
월단가	500,000	500,000	500,000
인정인원(명)	340,649	219,527	228,929
IAP 수립률(%)	98	98	98
지급횟수(회)	5.3	5.2	5.2

자료: 고용노동부

3)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취업경험 미충족자는 선발형으로 지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재산 5억 이하) 등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의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며, 이때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소요에서 현행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급횟수와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이 중 사업대상자는 연도별 인정인원과 취업활동계획(이하 “IAP”) 수립률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수) 지급인원은 연도별 인정인원에 IAP수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사업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21년을 제외한 2022~2023년 평균치를 적용하여 추계

- 개정안의 시행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상향 조정될 경우 참여인원이 확대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현재 구직촉진수당에 포함된 가족수당(월 10~40만원)은 고려하지 않고 산출하였으며, 향후 가족수당 제도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향후 지급인원, 연도별 인정인원, IAP수립률, 평균지급횟수 등이 변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2022~2023년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향후 실업률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지급횟수) 사업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21년을 제외한 2022~2023년 평균치를 적용하여 추계

○ (지원단가)

-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전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5]에 따른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 최근(2019~2023년) 연평균 증가율 토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현행법에 따른 지원단가는 월 50만원을 적용하여 산출

5)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표 3]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단위: 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512,102	527,158	548,349	583,444	623,368	5.04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표 4]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인정인원(A, 명)	224,228	224,228	224,228	224,228	224,228
IAP 수립률(B, %)	98.0	98.0	98.0	98.0	98.0
평균지급횟수(C, 개월)	5.2	5.2	5.2	5.2	5.2
현행 단가(D, 백만원)	0.50	0.50	0.50	0.50	0.50
개정안 단가(E, 백만원)	0.77	0.80	0.84	0.89	0.93
현행 구직촉진수당 (F=A×B×C×D)	5,713	5,713	5,713	5,713	5,713
개정안의 구직촉진수당 (G=A×B×C×E)	8,746	9,187	9,650	10,136	10,647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H=G-F)	3,033	3,474	3,937	4,423	4,93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단가를 인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3,033억원, 2030년 4,934억원 등으로 추계됨

[표 5]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추가재정소요	3,033	3,474	3,937	4,423	4,93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추계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변화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매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고용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구직촉진수당의 단가 인상으로 인해 IAP 수립률 및 평균지급횟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실업률 및 인구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